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광산안전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에는 현장관리업무담당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321호, 2020. 5.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교육면제 사유를 정하고,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을 위한 관측소 설치를 허용하며, 보전산지에서 설치를 허용하는 진입로의 너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 설치 허용(안 제10조)

최근 잇따른 대규모 지진 발생으로 국가적인 지진관측망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을 위한 관측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보전산지에 설치를 허용하는 진입로의 너비 확대(안 제10조, 제12조,

제13조)

보전산지에서 설치를 허용하는 진입로의 너비를 현행 3미터 이하에서 4미터 이하로 확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도로 기준과 맞추려는 것임

다. 외부 토석 반입 관련 채석단지 지정기준 정비(안 제39조)

외부토석의 토석채취허가지로의 반입을 금지하되 복구를 위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토석채취허가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채석단지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임

라.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 면제사유 규정(안 제50조의4)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321호, 2020. 5. 26. 공포, 11. 27. 시행)됨에 따라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광산안전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받은 면제 사유를 정함

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확대(안 별표 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계획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직접 이용되는 산지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는 등 감면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7. 23. ~ 9.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3미터”를 “4미터”로 한다.

3. 「기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상시설 및 「지진·지진해일·

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관측소

제12조제12항 중 “3미터”를 “4미터”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3미터”를 “4미터”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한 산림청장등”을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가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로 변경된 경우 또는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으로 변경된 경우: 제1호의 구분에 따른 산림청장등
나. 그 밖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한 산림청장등

제32조의2제1호 중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을 “법 제25조의2제1

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다른 법률에 따라 법 제25조의2제1호가목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법 제25조의2제1호가목”으로, “다음 각 목의 허가”를 “법 제25조의2제1호가목의 허가”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로, “같은 조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오목, 토목 및 우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마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나.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마.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중 교육·훈련, 병영생활 및 주거에 필요한 시설과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복지·체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제32조의4제2항제6호다목 본문 중 “비탈면”을 “비탈면(토석채취제한지역과 연접한 비탈면에 한정한다)”으로, “채취하여야”를 “채취해야”로 한다.

제39조제6항제7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제50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6조의3제3항”을 “법 제46조의3제3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6조의3제3항 단서에서 “「광산안전법」 제7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0조의5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광산안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제3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교육이수증을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50조의5제4항제1호에 관한 교육은 면제한다.

제51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제4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

별표 3의2 제1호가목의 설치지역란 단서 중 “훼손되거나”를 “복구계획서 상의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거나”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설치조건·기준란 중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사·점검·검사 등의 실시계획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할 것

별표 5 제1호다목 및 과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타목의 대상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

- 1)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 2)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
- 3)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조 제9호의2에 따른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 4)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 5)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 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 7)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8)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
9)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1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별표 5 제3호과목 중 “동법 제18조”를 “같은 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호 러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호에 머목부터 어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 수행에 앞서 실시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직접 이용되는 산지	100	100
버.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설치하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휴게시설과 대기실은 제외한다)	100	100
서.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100	100
어.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설치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철도 및 고속철도	100	100

별표 5 비고 제7호를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 지역에서의 허용행위) ①법 제10 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0조(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 지역에서의 허용행위) ①-----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기상관측시설</u>	3. 「기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상시설 및 「지진·지 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 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u>관측소</u>
4. ~ 12. (생략)	4. ~ 12.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10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란 절토·성토한 비탈면(땅깎기·흙쌓기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u>3미터</u>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를 말한다.	⑧ ----- ----- ----- ----- ----- <u>4미터</u> ----- ----- -----.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 제한) ① ~ ⑪ (생략)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 제한)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서	⑫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란 절토·성토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를 말한다.	
⑬・⑭ (생략)	⑬・⑭ (현행과 같음)
제13조(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 제한) ① ~ ④ (생략)	제13조(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 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란 절토·성토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를 말한다.	⑤
⑥・⑦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한 산림청장등 <신설>	----- 제출해야 -----. 1. (현행과 같음) 2. ----- ----- 경 우 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가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로 변경된 경우 또는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으로 변경된 경우: 제1호의 구분에 따른 산림청장등 나. 그 밖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한 산림청장등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원형 상태의 암석의 가장 긴 직선길이가 18센티미터 이상인 암석(이하 “자연석”이라 한다)을 굴취·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에 관하여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부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 -----. 1. 법 제25조의2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다른 법률에 따라 법 제25조의2제1호가목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 ----- ----- ----- ----- ----- ----- 2. 법 제25조의2제1호가목----- ----- 법 제25조의2제1호가목의 허가 ----- ----- ----- ----- ----- ----- ----- -----
②·③ (생략) 제32조의2(허가·신고를 하여야 하는 토석채취) 법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허가·신고를 하여야 하는 토석채취) ----- -----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공용·공공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오목, 토목 및 우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 다.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 라.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 <신 설>	-----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 ----- ----- ----- ----- 가.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나.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마.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3.·4. (생략) 제32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① (생략) ②법 제25조의4제3호에서 “공용·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중 교육·훈련, 병영생활 및 주거에 필요한 시설과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복지·체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3.·4. (현행과 같음) 제32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 략)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나. (생 략)

다.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추가로 굴취·채취하여야 하는 경우.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굴취·채취한 토석을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대상지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생 략)

③ (생 략)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① ~ ⑤ (생 략)

⑥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5. (현행과 같음)

6.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비탈면(토석채취제한지역과 연결한 비탈면에 한정한다)-----
채취해야 -----.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1. ~ 6의2. (생 략)

7. 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⑦·⑧ (생 략)

제50조의4(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 법 제46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 3. (생 략)

<신 설>

1. ~ 6의2. (현행과 같음)

7. ----- 제6호-----

⑦·⑧ (현행과 같음)

제50조의4(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 ① 법 제46조의3제3항 본문-----
-----.

1. ~ 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6조의3제3항 단서에서 “「광산안전법」 제7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0조의5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광산안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제3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교육이수증을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50조의5제4항제1호에 관한 교육을 면제한다.

제51조(수수료) ① ~ ③ (생 략)	제51조(수수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 를 말한다.	④ ----- ----- -----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u>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 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제4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u>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지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4141